

日本稅關에서의 知的財產權 侵害물품에 대한 단속 강화

尹 宣 熙
〈大阪 大學 講師〉

1. 처음에

최근 일본은 円貨가 등귀하면서 해외여행과 더불어 해외의 유명브랜드 상품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 오고 있다. 이러한 유명브랜드 상품 속에는 真正商品과 더불어 모조품(侵害物品)도 함께 일본시장에 上陸하고 있어 知的財產權者(本權所有者, 專用實施權者, 專用使用權者 또는 이들의 대리인)가 侵害物品으로 인하여 해당 知的財產權이 侵害받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大藏省稅關局이 지적재산권의 모조품(侵害物品)에 대해, 일본에 上陸하기 전에 방지하려고 大藏省稅關局이 關稅定率法(1910年法律第54號) 第21條 第1項 第4號의 규정에 의거하여 마약, 위조통화와 같이 지적

재산권의 侵害物品에 대해도 輸入禁制品으로서 규제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知的財產權의 侵害物品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해당 侵害物品을 몰수하여 폐기하거나 또는 侵害物品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을 수출국으로 돌려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同法 제1항 제4호).

이번 通達改正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가 認定절차 순서를 명문화하였고, 둘째는 모든 통지, 연락 등을 문서화하였고, 셋째는 수입금지 신청이 있을 경우는 우선적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넷째는 수입금지신청서의 제출 部數를 대폭 줄였고(전국세관 250부에서 120부수로), 다섯째 신청내용의 일부를 公表하는 것으로 하였고, 여섯째 侵害物品에 원칙적으로 몰수하는 것으로 되었다.

여기서는 大藏省稅關局 第519號(1992年 6月 5日)을 소개하려고 한다.

2. 知的財產權 侵害物品의 단속에 대한 改正趣旨

關稅定率法第21條 第1項 第4號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법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知的財產權」이라고 한다.)을 侵害하는 物品(이하 「侵害物品」이라고 한다.)의 단속요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1992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한편, 이 通達을 실시함과 더불어 「無體財產權侵害物品에 대한 수입금지 신청의 절차 등에 대해서」(大藏省稅關局第522號(1966年 5月 31日))는 폐지한다.

改正趣旨는 侵害物品의 단속을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侵害物品에 관한 수입금지신청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知的財產權을 침해할 의심스러운 물품 및 侵害物品의 취급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정비하는 改正趣旨이다.

3. 단속대상화물 및 신청인

侵害物品의 단속은 關稅法(1954年法律第61號) 第67條(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된 화물 또는 關稅法第76條

(우편물 수출입 간이절차)의 규정에 따라 郵政官署(우리나라의 우체국에 해당함)으로부터 개봉되는 우편물(이하 「國際郵便物」라고 한다.) 중, ① 신청이 있는 것(신청인은 知的財產權, 專用實施權者, 專用使用權者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다. 단, 權利의 使用許諾을 획득한 것에 지나지 않은 者, 예를 들면 輸入總代理店은 단속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신청 이외의 방법으로는 세관에 대해 정보제공이 있는 것, ③ 그외 세관이 판단하여 침해물품으로 의심이 가는 물품을 대상으로 심사·검사를 행한다.

4. 수입금지 신청방법

수입금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 者는 「知的財產權侵害物品輸入禁止申請書」 및 所정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세관 또는 侵害物品 수입이 예상되는 세관의 輸入部 不正商品等擔當官(과장 이상의 者 중에 지정함)에게 필요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국 세관에서 단속을 희망하는 경우는 受理稅關用 1부를 포함하여 12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입금지 신청서 受理要件

수입금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受理한다.

① 신청서 기재사항중, 권리의 내용, 侵害物品과 真正物品의 특징, 세관이 신청한 侵害物品을 발견하여 認定할 수 있기까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② 등록원부, 명백하게 侵害物品이라고 認定되는 자료 등, 그외에 필요로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③ 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서류에 따라 신청에 관한 물품이 知的財產權을 侵害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稅關이 容易하게 識別할 수 있는 것(예를 들면, 法院의 판결문 또는 特許廳의 심결문 복사본이고 이러한 것이 없을 때는 변호사 등이 작성한 감정서).

④ 신청에 관한 물품이 日本에 輸入되고 있

거나 輸入될 우려가 있다고 認定된 것.

이상의 것이외 많은 정보가 세관에 제공되 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단속이 가능하다.

특히 상표권에 관계된 並行輸入品인가 아닌 가의 판단에 있어서는 외국에 있어서 權利設定狀況, 외국과 권리자와의 관계, 權利許諾狀況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하다.

6. 신청준속 희망기간

申請存續을 희망하는 기간은 최고 2년이고, 계속하여 수입금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갱신수 속을 하면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7. 수입금지 신청서의 내용을 公表

수입금지 신청서의 내용을 公表하기로 한 것은 「知的財產權 侵害物品輸入禁止 申請書」를 보면 알 수 있고, 그외의 公表目的是 ① 善意의 수입자가 신청에 관한 侵害物品을 잘못하여 수입해 불칙의 손해를 입는 것을 가능 한한 未然에 방지하고, ② 侵害物品의 수입을 억제하여 權利者의 知的財產權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8. 侵害物品의 認定절차

(1) 知的財產權侵害의 의심이 가는 물품이 발견되면, (2) 發見部門의 長이 不正商品等擔當官에게 認定依賴, (3) 이 때 不正商品等擔當官은 수입자 및 권리자에게 의심스러운 물품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연락하고, (4) 知的財產權 侵害物品인가 아닌가의 認定調查(인정조사 방법은 ① 수입금지 신청서 등을 참고로 現品確認, ② 관계기관으로부터 참고자료 수집, ③ 수입자로부터 의견청취, ④ 권리자로부터 의견청취, 필요에 따라서는 現品에 대하여 鑑定을 依賴)한다. 그러나, 輸入者가 認定調查 도중에 자발적 처리*할 수도 있다. (5) 侵害物品으로 의심이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는 不正商品等擔當官이 수입자에게 조사결과를 연락한다. 그러나, 侵害物品이 아닌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輸入을 許可한다. (6) 위의 (5) 경우로 상당히 의심

이 인정된 경우에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不正商品等擔當官은 輸入者로부터 辨明을 聽取하여 侵害物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권리자에게 처리결과를 연락하고 수입자에게는 輸入을 許諾하나 侵害物品으로 인정된 경우는 권리자에게 처리결과를 연락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는 關稅定率法 第21條 第2項의 처분기준에 따라 没收 또는 侵害物品을 돌려 보낼 것을 명령할 수 있다.

9. 知的財産權의 侵害가 되지 않은 物品

下記의 물품은 知的財産權 侵害가 되지 않는다.

첫째, 수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그외 業으로서 수입되지 않은 물품일 것을 필요로 한다.

둘째,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즉 이것은 권리자로부터 수입동의서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서 수입허가가 된다.

셋째, 並行輸入品이다. 日本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의 상표가 붙은 물품을 商標權者(또는 해당물품을 권리자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者) 이외의 者가 수입할 경우, 해당 標章이 해외에서 違法하게 붙어 擴布된 물품이고, 違法하게 擴布한 者와 日本의 商標權者가同一人일 경우 또는同一人이라고 볼 수 있는 특수한 관계(兩者間의 법률적·經濟的 關係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商標權 침해라고 보지 않고 並行輸入品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당해 擴布된 물품에 붙은 標章과 日本의 商標權者와 관계가 있는 標章에 대해서는, 그 表示의 出處 또는 보증하는 品質이 각각 별개의 것인 경우 등, 대개 標章 사용이 獨自의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을 제외한다.

上記 並行輸入에 관하여는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 日本의 유명한 최초의

PARKER判決(1970년 2월 27일 大阪地裁<1968 (ワ) 제 7003호>, 1971년 8월 6일 大阪高裁<1970 (ネ) 제338, 861호>)이 있는 바, 이 판결 이후로 並行輸入品에 대해서는 商標權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10. 끝으로

종래는 지적재산권에 관해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은면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인식이 급속하게 변해, 권리자의 자기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지적재산권자들은 침해물품이 일본시장에 상륙하기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약, 각성제, 총포 등과 같은 것을 강력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세관은 지적재산의 권리자, 일반소비자의 손해를 줄이고, 나아가 무역질서를 확보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단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無體財產權侵害物品에 대한 수입금지신청」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5일 通達을 改正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知的財產權侵害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기술·경제대국이 되어서 지적재산권의 침해물품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에 저지할 수 있도록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産業財産權法 判例要覽

- 1961~1991 大法院判決文 -

- 도서출판 특허문화 발간
- 467p, 20,000원
- TEL : 565-0205